

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서

지정번호	제 호
기관(단체)명	
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대표자(성명)	
주소 (주된 사무소의 소재지)	

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(단체)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유의사항

-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- 나.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다.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
 - 라. 1년 이상 계속하여 해양교육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
 - 마. 교육과정을 지정받은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
-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